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1.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1월 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84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관리과장 조성미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점용료 감면조항 삭제(안 제7조)
-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수)

본 개정 조례안은 위법한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도로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점용료 감면을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감면 조항은 위임입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초과입법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제7조 전체를 삭제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중 “제28조제5항제9호”를 “제28조제5항제10호”로, 안 제3조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안 제5조 중 “제71조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안 제8조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1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